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2018년 월 일 제 회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제안년월일	2018년 월
운용부서	건설안전처

의결사항

1. 의결주문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가충당부채의 적정환입, 이익처리 및 공시 등 회계기준을 반영한 원가충당부채의 적정 관리를 위한 개발사업규정의 개정에 따라 동 시행세칙의 관련 조항을 개정

3. 주요골자

가. 원가통제계정을 원가충당부채로 용어 수정

나. 제품을 제조하는 부서장은 규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원가충당부채를 설정하며, 해당 원가계산 단위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하고,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9조에 따른 제품제조원가 확정시기로부터 6일 이내에 설정

다. 원가충당부채는 설정 당시의 내역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설정당시의 내역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가충당부채 전용계획을 수립·시행

라. 원가충당부채 환입 처리 방법(제89조)

4.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1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함 의 : 해당사항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없음

붙임 :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1부. 끝.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원가충당부채의 적정환입, 이익처리 및 공시 등 회계기준을 반영한
원가충당부채의 적정 관리를 위한 개발사업규정의 개정에 따라 동
시행세칙의 관련 조항을 개정

2. 주요골자

- 가. 원가통제계정을 원가충당부채로 용어 수정
- 나. 제품을 제조하는 부서장은 규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원가충당부채를
설정하며, 해당 원가계산 단위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하고,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9조에 따른 제품제조원가 확정시기로부터 6일 이내에 설정
- 다. 원가충당부채는 설정 당시의 내역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설정당시의
내역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가충당부채 전용계획을 수립·
시행
- 라. 원가충당부채 환입 처리 방법(제89조)

- 3 -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5조 (원가충당부채 설정) ① 제품을 제조하는 부서장은 규정 제60조 제1
항에 따라 원가충당부채를 설정한다.
- ② 원가충당부채는 해당 원가계산 단위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하여 설정 한다.
- ③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9조에 따른 제품제조원가
확정시기로부터 6일 이내에 설정 하여야 한다.

제86조 및 제87조를 삭제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8조 (원가충당부채의 사용) ① 원가충당부채는 설정 당시의 내역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② 원가충당부채를 설정당시의 내역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가충당부채 전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9조 (원가충당부채의 환입) ① 규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원가충당부채
잔액규모를 조정하는 경우로서 잔액이 계상되어야 할 원가충당부채보다
많은 때에는원가충당부채를 사용한 부서장은 그 차액을 다음 각 호에 따
라 환입하여야 한다.
- 설정목적의 이행, 변경 또는 소멸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가충당부채
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이와 같다
1. 원가충당부채가 설정된 자산이 전기 이전에 매출된 경우에는 원가차익
으로 처리한다.

- 4 -

- 2. 원가충당부채가 설정된 자산이 해당연도에 매출된 경우에는 매출원가에서 감액처리한다.
- 3. 원가충당부채가 설정된 자산이 장부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에서 감액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현행	개정안	사유
제 85조(원가통제계정 설정) ① 지역본부장은 원가통제계정을 설정한다.	제85조 (원가충당부채 설정) ① <u>계품을 제조하는 부서장은 규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원가충당부채를 설정한다.</u>	○ (전문개정) - 용어수정 - 지역본부장 이외 본사 부서장(ex. 본사사육 건설, 개성공단), 사업본부장 등을 포괄하는 부서장으로 변경
② 원가통제계정의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고 같다. 1. 규정 제6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사비집행조서에 따른다. 2. 규정 제60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추가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그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규정 제60조제1항제3호의 용지비는 추가로 매입한 토지대금에 의하며 지장물보상금, 지장물이설비, 용지매수부대비(취득세 등 제 세금을 포함한다) 및 측량등기비는 추산에 따른다. 4. 규정 제6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추산에 따른다. 5. 규정 제60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u>원가충당부채는 해당 원가계산단위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하여 설정 한다.</u> (1-5 삭제)	- 규정 제60조 제1항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 개정 - 원가충당부채의 설정대상인 제조원가 투입 예정 사업비의 산출방법을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포괄적으로 규정 - 원가충당부채 설정금액의 한도액 명시
③ 주택설계부서장이 추가로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결재를 받아 설계도서 및 추가공사비 내역을 건설공사의 최종 준공일까지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공사 준공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삭제)	- 사업계획 변경, 설계변경 사항은 「위임전결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사문화된 조항 삭제
④ 원가통제계정은 건설공사의 최종 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설정하여야 한다.	③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9조에 따른 제품제조원가 확정시기로부터 6일 이내에 설정	- 용어수정 - 원가충당부채 설정시기를 「회계기준시행세칙」 제120조와 일치시킴

현행	개정안	사유
제 86조(원가통제계정 설정금액) ① 원가통제계정의 설정금액은 해당 원가계산단위의 실제원가가 분양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 다만, 임대아파트는 계획금액 범위 내이어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분양가격산정 후 지체 없이 분양가격을 원가통제계정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이어야 한다. 제86조 삭제	- 사문화된 조항 삭제 - 지구별 원가충당부채 설정액의 한도는 총사업비 범위 내로 규정(개정안의 제85조 제2항)
제 87조(원가통제계정 설정보고) ① 지역본부장은 원가통제계정을 설정한 후 설정금액에 대한 회계결의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의 최종 준공검사일로부터 6일 안에 회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설정내역 및 설정금액을 원가통제계정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7조 삭제	- 용어수정 - 회계결의서 제출기한은 원가충당부채 설정시기 통일
제 88조(원가통제계정의 집행) ① 지역본부장이 원가통제계정을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설정 당시의 내역에 따라야 한다. ② 원가통제계정의 설정당시의 내역과 다르게 사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역본부장이 설정 당시의 내역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가통제계정 전용계회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규정 제60조제1항제1호의 원가통제계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자(지급자재 검수자 또는 건설공사의 검사자를 말한다)가	제88조 (원가충당부채의 사용) ① 원가충당부채는 설정 당시의 내역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② 원가충당부채를 설정당시의 내역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가충당부채 전용계회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삭제)	- 용어수정 - 기업회계기준은 충당부채의 전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원가충당부채 설정 대상이 다양하여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허용 - 사업비 집행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삭제

현행	개정안	사유
작성한 검수조서 및 검사조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 89조(원가통제계정의 잔액처리) ① 원가통제계정을 집행한 부서장은 규정 제60조에 따른 원가통제계정의 사용기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사용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원가통제계정이 설정된 자산이 해당연도의 매출된 경우에는 매출원가에서 감액 처리한다. 2. 원가통제계정이 설정된 자산이 장부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에서 감액 처리한다. 3. 원가통제계정이 설정된 자산이 전기 이전에 매출된 경우에는 영업외 수익(원가차익)으로 처리한다.	제89조 (원가충당부채의 환입) ① 규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원가충당부채 잔액규모를 조정하는 경우로서 잔액이 계상되어야 할 원가충당부채보다 많은 때에는 원가충당부채를 사용한 부서장은 그 차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입하여야 한다. <u>설정목적의 이행, 변경 또는 소멸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가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이와 같다</u> 1. 원가충당부채가 설정된 자산이 전기 이전에 매출된 경우에는 원가차익으로 처리한다. 2. 원가충당부채가 설정된 자산이 해당연도에 매출된 경우에는 매출원가에서 감액처리한다. 3. 원가충당부채가 설정된 자산이 장부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에서 감액처리한다.	- 용어 및 문구수정 - 규정 제60조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 잔액 규모 조정 방법 명시 - 회계기준시행세칙과 일치시킴